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구성요건 추가〉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87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죄의 구성요건에 ‘알면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복제물임을 알면서----- ----- ----- ----- ⑤ (현행과 같음)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등에 대해서는, SNS등에서의 광고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자동으로 재생 또는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고의범에 한하여만 처벌할 수 있도록 본 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¹⁾에서는 아동·

1)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구입죄의 구성요건에 ‘알면서’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형법²⁾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최근 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회의록(p.68 - p.74)』, 『제418회-법제사법제7차 전체회의(2024년9월25일) 회의록(p.12 - p.17)』, 『제418회-제9차(2024년9월26일) 본회의 회의록(p.25 - p.27)』